

의안 검토 보고서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8. 9. 11. 대전광역시장
2. 건 명 :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
3. 안건요지 : 따 로 붙 임
4. 검토의견 : 따 로 붙 임

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8년 10월 일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이 환 구

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2008년 9월 11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9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-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 완료로 형성된 자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3조,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 제4조에 의거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에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◇ 출자 기본계획 및 자산액

가. 기본계획

- 출자 및 부채인계 기준일 : 2007. 12. 31
- 출자자산
 - 도시철도 1호선 건설투자비(건설공사비+건설관리비)
 - 단, 운영시스템(BLT사업)은 상환 만기(2011년) 후 출자
- 출자자산 가액결정
 - 건설사업비 지출액을 적산, 자산의 취득원가로 산출한 내역에 대하여 공인회계기관이 검증한 자산평가액
- 부채인계
 - 도시철도 1호선에 직접투자를 위하여 발생한 부채액 중 출자 기준일 현재 미상환 원리금('08년 원리금 상환시기 도래 분은 시 예산으로 상환)

나. 출자자산액

○ 출자 자산액

구 분	출자 자산액(원)	자 산 내 역
계	1,598,790,614,494	
공유재산	113,045,845,710	토지, 건물, 지상권
기 타	1,485,744,768,784	도시철도 1호선 시설물 등(공유재산 제외)

○ 부채인계액

구 분	계	도시철도채권	채특자금	비고
부채인계액(원)	207,387,377,085	161,459,931,474	45,927,445,611	

3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이 지난 2007. 4월 완료됨에 따라 형성된 자산을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에 출자하기 위하여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3조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, 「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」 제4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.
- 도시철도 1호선 출자 및 부채인계 기준일은 2007. 12. 31일로 하고, 출자대상은 본선 및 차량기지 총연장 25.0451 킬로미터와 정거장 22개소, 외삼·판암차량기지 2개소, 도시철도 종합사령실 등 도시철도 1호선 건설투자비로서,
- 출자자산 가액결정은 지난 2005. 12. 27 대전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장과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사장 간에 체결한 「도시철도 시설물 등에 관한 인계·인수 협약서」 제7조에 의거 외부전문

공인기관이 검증한 자산평가액으로 결정하여 총 자산액 1조 5,987억 9,061만 4,494원과 부채인계액 2,073억 8,737만 7,085원임.

- 도시철도 1호선 시설물 등을 도시철도공사에 현물 출자할 경우 시설물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과 유지관리가 가능해 짐에 따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,
- 금회 현물 출자에서 제외된 자산인 운영시스템 BLT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료 상환이 완료되는 2011년까지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상환 후 추가 출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,
- 인계한 부채 중 대전광역시장이 2008년 말까지 상환할 부채는 상환후 철저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.